#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
# 심 사 보 고 서

2000년 9월 30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9 . 21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나. 회부일자 : 2000. 9. 29
다. 상정일자 : 제7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9.29) 상정 ·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신만희)

### 가. 제 안 이 유

○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.

### 나. 주 요 골 자

○ 주민이 자연자산을 이용할 권리와 자연환경을 보전할 의무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○ 사업활동과 관련한 사업자의 자연자산을 보전할 의무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○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등의 생태계보호와 우선적으로 복원하여야할 의무를 규정(안 제5조)
○ 자연환경 조사와 그 조사내용을 규정(안 제6조)
○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지역을 규정(안 제8조)
○ 자연환경 조사원의 임명 · 위촉과 경비지급 및 대행기관을 규정

(안 제9조)

○ 가치있는 자연경관에 대한 보전·관리방안을 규정(안 제10조)

○ 민간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방안을 규정(안 제12조)

○ 자연휴식지의 지정 및 관리계획 방안을 규정(안 제14조)

○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실관리 의무 및 훼손시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(안 제16조)

○ 자연휴식지의 주민협의회 구성·운영사항을 규정(안 제16조)

○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방법을 규정(안 제17조)

○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징수기준을 규정(안 제18조)

○ 자연휴식지의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규정(안 제19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.(전문위원 : 박태영)

■ 관련법령

○ 자연환경보존법 제43조(자연휴식지의 지정·관리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·경관적 가치등이 높고,자연탐방,생태교육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**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휴식지**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은**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**이용료를 징수**할 수 있다.

○ 제44조(자연경관의 보전) ② **지방자치단체의 장**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**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**하여야 한다.

○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

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조례임

○ 주민의권리와 책무의 규정과 함께 군수는 생태계의 보호·복원·자연환경 조사관리, 자연경관의 보전, 자연형 하천관리, 교육·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토록 한 것이 주내용임

○ 자연휴식지 지정은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.

○ 이용료는 청소비로 하여 대인은 2,000원, 소인 1,000원으로 하되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이용료를 50% 감액하도록 하였으며 이 금액을 그간 운영하여온 마을관리 휴양지의 사례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보아짐.

○ 기타 자구·형식등 법체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 의 요 지 | 답 변 요 지 |
|---|---|
| ○ 자연휴식지 및 마을관리휴양지와의 용어 정의는? | ○ 자연휴식지는 국립·도립·군립 관광진흥법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지정이며, 마을관리 휴양지와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이 안될수 도 있음 |

## 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##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10부